

14-라. 교사(校舍)시설 확보 현황

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 : **대학** 대학원 **전문대학** **대학원대학**

【원자료조사시기】 : 2025년 4월(국·공·사립대학 교육시설 현황 접수 및 집계)

【공시시기】 : 2025년 10월

【공시방법】 : 간접입력(한국사학진흥재단)

【공시내용】 : 2025년 교사(校舍)시설 확보 현황

【공시양식】 : 다음 양식 적용(자료기준일: (대학, 전문대학, 대학원대학) 2025. 4. 1., (기술대학, 사이버대학) 2025. 3. 1.)

(단위 : m², %)

기준 연도	기준면적(m ²)		건축물 전체 보유면적(m ²)				교사시설확보율(%)		
			교사확보를 산정 면적			그 외			
	입학정원 기준 (A)	재학생 기준 (B)	기본시설 (C)	지원시설 (D)	연구시설 (E)	부속시설	기타시설	입학정원기준 (C+D+E)/A×100	재학생기준 (C+D+E)/B×100

■ 작성지침

【기준면적】 :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, 「기술대학설립·운영규정」, 「사이버대학 설립·운영 규정」에 의한 교사 기준면적

○ 관련법규 참조

-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, 「기술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[별표 3]
- 「사이버대학 설립·운영 규정」 [별표 1]
-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[별표 3]

※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에 의한 교사 기준면적 산정 시 2025. 4. 1. 기준 재학생 수가 입학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에 계열별 재학생 수를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

【입학정원기준】 : 정원내 학부(계열별 학과 주·야별 입학정원 중 최댓값 × 수업연한(2년, 3년, 4년, 5년 이상) + 정원내 대학원(주간 입학정원 × 수업연한)

※ 계열 구분이 어려운 학과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과에 신입학한 총 정원을 계열이 최초로 구분되는 학년의 4.1. 기준 정원내 재학생 비율로 안분(소수점은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

※ 사이버대학 시설정원 입력 시 유의사항

- 당해연도 교육부에서 허가받은 입학정원(수업연한 곱하지 않음)
- 대학원이 설치된 사이버대학은 대학원 입학정원의 1.5배수

<대학, 전문대학>

※ 학생정원 산정 시, ‘결손인원’ 또는 ‘편입학여석’ 활용을 통한 ‘첨단학과 증원 인원’(총 정원범위 내 자체조정, 또는 국립대 증원을 통한 첨단학과 정원 증원분은 입학정원에 포함) 및 「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」에 따른 ‘모집유보 인원’은 제외하여 산출

※ 제외해야 하는 첨단학과 결손인원/편입학여석 활용분

- 결손인원 활용 방식: 첨단학과 정원 증원을 위해 활용한 결손인원에서 타 학과 누적 감축정원을 뺀 값
- 편입학 여석 활용 방식: 편입학 여석을 활용하여 증원한 첨단학과 정원
- * 결손인원 활용과 편입학 여석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, 결손인원 활용분과 편입학 여석 활용분을 합산

<대학원>

- ※ 학생정원 산정 시, ‘결손인원’ 활용을 통한 ‘첨단학과 증원 인원’ 및 「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」에 따른 ‘모집유보 인원’은 제외하여 산출
- ※ 제외해야 하는 첨단학과 결손인원
 - 타 학과 정원 감축형: 첨단학과 정원에서 타 학과 누적 감축정원을 뺀 값(즉, 미감축 정원)
 - 타 학과 정원 유지형: 첨단학과 정원
 - * 타 학과 정원 감축형과 유지형이 혼재하는 경우, 각각의 활용분을 합산

<대학원대학>

- ※ 학생정원 산정 시, 「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」에 따른 ‘모집유보 인원’은 제외하여 산출

참고

- 2005. 10. 25 이전 설립 대학 중 본교·분교 및 캠퍼스 상관없이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400명(대학원대학 100명) 미만인 경우 그 정원을 400명으로 환산하여 입력
- 2005. 10. 25 이후 설립 대학 중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,000명(대학원대학 200명) 미만인 경우 그 정원을 1,000명(대학원대학 200명)으로 환산하여 입력

【재학생기준】 : 정원내·외(계열별, 학년별, 주·야별 최댓값) + 정원내·외 대학원(주간 재학생)

- ※ 제외: 계약학과 재학생,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 재학생
- ※ 「고등교육법」 제23조5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재학생에 포함시킬 수 없음

○ 대학, 전문대학, 대학원대학(각종학교 포함)의 교사기준면적

(단위: m²)

구분		계열별	인문·사회	자연과학	공학	예·체능	의학
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	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 연도를 경과하지 않은 대학		12	17	20	19	20
	운영 중인 대학		12	14			

- ※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(단, 간호학과 4년제 지정을 받은 전문대학의 경우 해당 학생정원만큼은 4년제 대학의 기준을 적용)
- ※ 기술대학의 경우, 「기술대학설립운영·규정」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사회실무계 12m², 자연공학계 17m²으로 준용한다.

○ 사이버대학의 교사: 「사이버대학 설립·운영 규정」 [별표 1]에 의한 사이버대학의 교사

구분	교육기본시설	지원시설
교사 범위	대학 본부 및 행정실, 교수 연구실, 강의실, PC실습실, 세미나실, 콘텐츠 개발실	서버 및 통신장비 관리실, 시스템 운영실, 디지털 도서관
기준면적	○ 입학정원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 - 1,000명 미만: 990 m ² - 1,000명 이상 ~ 2,000명 미만: 1,485 m ² - 2,000명 이상 ~ 3,000명 미만: 1,980 m ² - 3,000명 이상: 2,475 m ²	

- ※ 기준면적은 건물의 연면적(공용면적은 제외)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.
- ※ 전문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은 위 기준면적의 70%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.

【보유면적】

- 대학, 전문대학, 대학원대학 보유면적: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에 의한 교사시설
 1.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교지경계선 내 교사
 2. 교지경계선 “20km 이내 이거나 동일 시·군·구 내의 학생 기숙사”는 해당 부지의 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학생기숙사로 이용하면서, 학교 소유의 건물인 경우에는 교사시설로 인정하고, 교지경계선 “20km 밖이거나 타 시·군·구의 학생기숙사”는 해당 부지가 도시·군계획시설 상 ‘학교’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교사시설로 인정
 3. 교지경계선 밖 “연구시설”로서 해당 부지가 도시·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 교사시설로 인정
-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[별표 2] 교사시설 구분

교사시설	구분		
교육기본시설	강의실·실험실습실·도서관·체육관·교수연구실·행정실·학생회관·대학본부·정보전산원·산학협력단·학교기업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		
지원시설	강당·실습공장·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		
연구시설	연구용 실험실·대학원 연구실·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연구와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		
부속시설	공통	교육기본시설,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대학에 부속한 일체의 시설로서 박물관, 교수·직원·대학원생·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, 공간, 연수원, 부속학교 등	
	농학계열	농학에 관한 학과 등	농장·농장건물 및 농장기공장
		축산학에 관한 학과 등	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
		임학에 관한 학과 등	학살림·임산기공장
	공학계열	공학에 관한 학과 등	공장
		항공학에 관한 학과 등	항공기·격납고
	수산·해양계열	어로학·항해학에 관한 학과 등	실습선
		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 등	수산기공장
		증식학에 관한 학과 등	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
		기관학에 관한 학과 등	기관공장
	약학계열	약학에 관한 학과 등	약초원·실습약국
		제약학에 관한 학과 등	제약실습공장
	의학계열	의학·한의학·치의학에 관한 학과 등	부속병원
수의학에 관한 학과 등		동물병원	

비고: 대학 또는 학과, 학부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- 사이버대학 보유면적
 1. 사이버대학설립인가 받은 위치의 교사(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)
 2. 사이버대학이 인가받은 위치 외에 “학습관”으로 인가된 경우 교사시설로 인정(단, “학습관”이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한함)

【교사(校舍)시설 확보율(%)】

- 대학, 전문대학, 대학원대학 교사(校舍)시설확보율(%): [(기본시설 + 지원시설 + 연구시설) / 기준면적] × 100
- 사이버대학 교사(校舍)시설확보율(%): [(기본시설 + 지원시설) / 기준면적] × 100

■ 참고사항

- 교사(校舍)시설 확보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
-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